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무소속 중랑구 제4선거구 민병주 의원입니다.
- 현행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확장의 가능성이 큼니다. 이에 따라 계획의 범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현행 조례상 골목길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주체가 시장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의 시행 주체인 구청장의 역할과 괴리가 발생하는 등 조례의 정합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에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골목길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주체를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